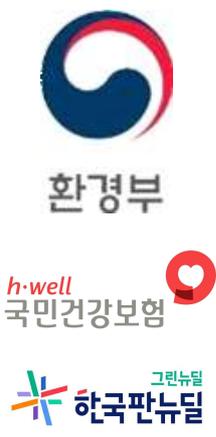


| 보 도 자 료 | | | |
|---|-------|--|---|
|  | 보도일시 | 2021년 5월 11일 14: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 |
| | 담당 부서 |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| 조현수 과장 / 임호주 사무관 044-201-6750 / 6760 |
| | | 건강보험공단 | 이경란 부장 / 홍서정 팀장 033- 736-2402 / 2414 |
| | 배포일시 | | 2021. 5. 11 / 총 4매 |

환경부-건강보험공단, 환경보건 빅데이터 체계 구축한다

- ◇ 환경과 보건 정보 연계된 ‘환경보건 빅데이터’ 구축
- ◇ 사전 예방적인 환경보건 디지털 감시체계 도입 기반 마련

- 환경부(장관 한정애)와 국민건강보험공단(이사장 김용익)은 환경과 건강보험 분야의 각종 자료(데이터)를 연계하여 ‘환경보건 빅데이터’를 구축하는 업무협약을 5월 11일 정부세종청사 6동 회의실에서 체결했다.
-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국민 건강정보 자료에 지역단위 환경정보를 연계하여 환경보건 빅데이터를 구축할 계획이다.
 - 또한 구축되는 환경보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공동연구를 추진하여 국가·지역의 환경성질환 발생 예측 등 이상징후를 파악하는 환경보건 및 환경성질환 디지털 감시체계도 만든다.
 - 아울러 환경보건 빅데이터를 다각도*로 분석하여 환경보건정책의 목표 설정 및 효과 평가에 활용할 예정이다.

* △환경유해인자와 건강영향 상관성분석, △환경성질환 현황, △환경보건 상태 평가 등

-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“국민 건강보호를 위해 환경과 건강 분야의 공공 자료(데이터)의 활용을 강화하기 위해 양기관이 힘을 합쳤다”라면서, “향후, 구축되는 환경보건 빅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환경보건 감시체계 및 환경보건안정망을 구축하고 사전 예방적 국민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- 신순애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전략본부장은 “환경부와 함께 환경보건 빅데이터를 구축하여 환경 위험요인과 질병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환경성 질환에 대한 감시체계를 공동 운영하여 국민건강 알람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등 대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사전대응 체계를 마련하겠다”라고 말했다.

붙임 환경부-건강보험공단 업무협약서. 끝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임호주 사무관(☎044-201-6760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환경부-국민건강보험공단

「환경보건 빅데이터 구축·활용 상호협력 업무협약서」

환경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(이하 '공단')은 환경과 보건의료 데이터가 연계된 빅데이터(이하 '환경보건 빅데이터')의 구축과 빅데이터 기반 조사·연구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에 대해 양 기관의 긴밀한 업무협력이 필요함을 깊이 인식하고 다음과 같이 상호 협력하기로 한다.

제1조(목적) 본 협약은 환경부와 공단에서 생산·보유하고 있는 공공정보의 활용과 환경보건정책의 과학적 근거확보를 위한 환경보건 빅데이터 구축 및 감시체계 운영의 상호발전 및 협력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본 운영원칙) 양 기관은 상호 협력함에 있어 당해 기관의 제 규정을 준수하고 상호 호혜적인 교류 및 협력관계를 유지한다.

제3조(협력내용 및 범위) 환경부와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호 협력하며 구체적인 수행방법은 상호 협의하여 추진한다.

- ① 환경보건 빅데이터 및 감시체계 구축·운영을 위한 실효적 협력체계 구축
- ② 환경보건 빅데이터 및 감시체계 구축·운영에 필요한 기관 간 자료 제공 및 공유
- ③ 환경보건 빅데이터 기반의 국가·지역 환경성질환 현황분석, 환경보건 상태평가, 환경성질환 질병부담 등에 대한 공동 연구 및 사업
- ④ 양 기관의 협력을 통하여 생산된 결과물에 대한 기관 간 공동 홍보

제4조(협의 이행에 따른 세부사항)

- ① 이 협약서에 규정한 협력사항의 효율적 추진과 세부적 업무에 관한 상호 협의를 위해 협의회를 구성하고, 다음 각호의 협의를 한다.
- ② 협의회는 분기별로 개최하며, 실무담당자를 지정한다.
- ③ 본 협약서에 명기되지 않았거나 협력을 위한 사항이 추후 발생할 경우 양 기관의 규정범위 내에서 상호 합의에 의해 정한다.
- ④ 공동사업을 진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등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
제5조(업무 협약 및 교류) 양 기관은 협약 목표 달성을 위하여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며 인력의 활용 및 교류를 할 수 있으면 방법은 양 기관의 규정에 따른다.

제6조(해석)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협약성의 조문 해석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
제7조(양도금지)

- ① 이 협약의 권리와 의무는 서면 상 상호 합의 없이 제3자에게 임의로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.
- ② 단, 환경부-공단이 협의하여 환경보건 빅데이터 및 감시체계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하여 별도로 지정한 기관은 제외로 한다

제8조(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 유지의 의무)

- ① 본 협약서에 의하여 교환되는 개인정보 등 비밀정보 관련 데이터는 개인 정보 보호관련 법령, 규정과 각 기관의 정보공개 법령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.
- ② 양 기관은 협약이행·교류·협력과정에서 취득한 상대방과 관련한 정보를 이 협약의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하며,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③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유지 의무는 본 협약서의 효력 종료 후에도 계속 유효하다.

제9조(협의 조정) 이 협약서에 해석상 의견차가 있거나 추가적인 협의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실무자를 통해 조정한다.

제10조(효력 및 유효기간) 본 협약서의 효력은 양 기관의 당사자가 서명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협력사항을 중지하거나 더는 수행을 원치 않을 경우 상호 협의 하에 본 협약서를 해지할 수 있다. 협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

제11조(개정) 본 협약서의 개정은 양 기관의 서면 합의로 가능하다.

제12조(기타)

- ① 양 기관은 상호간 신의와 성실로 협력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.
- ② 이 협약의 증명을 위하여 본 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양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1년 5월 11일

환경부
장관 한 정 애

국민건강보험공단
이사장 김 용 익